



금융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

배포 후 즉시

배포

2019.1.31.(목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 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이영직 (02-2100-2780)		최 성 규 사무관 (02-2100-2782)
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박주영 (02-2100-2510)		김 기 태 사무관 (02-2100-2523)
	금융위 은행과장 전요섭 (02-2100-2950)		서 지 은 사무관 (02-2100-2954)
	금융위 보험과장 하주식 (02-2100-2960)		권 기 순 사무관 (02-2100-2963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 (02-3145-8020)		김 부 곤 팀 장 (02-3145-8040)
	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김성우 (02-3145-8350)		임 종 건 팀 장 (02-3145-8345)
	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박진해 (02-3145-7240)		정 해 석 팀 장 (02-3145-7244)

제 목 :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확대

- **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면제,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인하**
☞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비용 감소
- **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한도 점진적 확대 추진**
☞ 은행권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제고
- **BIS비율, 新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**
☞ 은행·보험회사의 커버드본드 투자유인 확대

1 커버드본드 개념 및 장점

- 커버드본드(Covered Bond)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(만기 5년 이상)채권
 - 주택저당증권(MBS : Mortgage Backed Securities), 은행채 등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*를 가진 것으로 평가
 - *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, 발행기관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 등
- 커버드본드의 구조적 안정성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금융기관의 안정적 장기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

-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경우 장기·저금리 재원확보가 용이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장기·고정금리 대출공급 확대 가능
 -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는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
- ※ '08년 금융위기 당시 MBS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았던 미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MBS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, 유럽은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발하여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 평가

2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 경과

- 우리나라는 '14.4월 「이중상환채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 국내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기틀을 마련
- 그러나,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은행의 발행실적은 4건(모두 외화 발행)에 불과하며, 원화 발행은 전무한 상황
- 「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이 가능한 주택금융공사 발행실적(원화 5건, 외화 7건)을 포함해도 16건에 불과

3 부진 원인

- (발행자)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음
 - 커버드본드 금리는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의 중간 수준이나, 국고채-은행채 간 스프레드*가 작아 금리절감 효과 미미
 - * ('16년) 0.177% ('17년) 0.224% ('18년) 0.208% (최근 3년) 0.203%
 - 커버드본드 발행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*(약 20~30bp 추정)을 감안하면, 은행채에 비해 발행 실익이 낮음
 - * 초기시스템 구축비용(기초자산집합의 추출 및 선정, 관리시스템 구축 등), 사후관리비용(기초자산감시인, 자산관리기관 수수료 등) 등
- (투자자) 커버드본드는 우선변제권, 이중상환청구권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은행채 등 다른 채권 대비 안정적이거나,
 -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규제비율(은행 BIS, 보험 RBC 등) 산출시 은행채 등과 동일한 위험도를 지닌 자산으로 분류

4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

가. 발행자 측면

①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을 면제하여 은행의 발행비용 감소

- (현행) 기존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효율은 4bp로,
 -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일반 은행채 발행분담금 효율과 동일한 수준
- (개선)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효율을 면제하여 일반 은행채 보다 발행비용 측면의 혜택 부여

⇒ (조치사항) 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※ 발행분담금 면제 관련 금융기관분담금규정 개정 완료('19.1.30일 금융위 의결)

②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 상향조정 검토

- (현행) 원화예대율 산정*시 커버드본드(만기 5년 이상)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%까지 포함 가능

* 예대율(%)=(원화대출금/원화예수금)×100 (→ 100이하로 유지할 의무)

- 현재까지 은행의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사례가 없어 위 규정을 활용하지 못했으나, 예대율규제가 강화*됨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수요가 확대될 가능성

* 가계·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(가계대출 +15%, 기업대출 △15%, 개인 사업자대출 0%)하여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('20.1월 시행)

예대율 규제 강화 및 커버드본드발행에 따른 예대율 변화

구 분	은행권 원화예대율 ('18.9월기준, %, %p)						
	현행 (A)	가중치 조정 ¹⁾ (B)	증 감 (B-A)	커버드본드발행		증 감	
				1%(C)	2%(D)	(C-B)	(D-B)
은행 평균	96.0	99.6	3.6	98.6	97.7	△1.0	△1.9

- (개선) 현행 최대 1% 한도를 유지하되, 향후 커버드본드 발행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한도 확대방안도 검토

⇒ (조치사항) 「은행업감독규정」 개정 (필요시)

③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고정금리 주담대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

- (현행)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주담대 구조개선(고정금리, 분할상환) 실적*에 따라 주신보출연료를 인하*하는 인센티브 제공중

*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0.01~0.06% 감면

- (개선) 고정금리 취급실적 산출시 커버드본드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급한 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(120%)

⇒ (조치사항) 고정금리 실적점검방법 개편 ('19.上)

나. 투자자 측면

① [은행] BIS비율 산출시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

- (현행)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BIS비율 산출시 채권 종류와 관계없이 은행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결정*

* 동일한 은행이 발행한 일반 은행채와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동일
(예 : AAA등급 20%, BBB등급 50%, CCC+등급 150%)

- (개선) 바젤Ⅲ 개편안*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일반 은행채 대비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 적용(예: AAA등급 커버드본드 10%)

* 바젤Ⅲ 개편 최종안('17.12.7일)에 따르면 커버드본드에 대해 별도로 완화된 RW 기준(10~100%)을 마련하기로 함('22.1.1일 시행)

⇒ (조치사항)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 ('19년)

② [보험] 커버드본드 위험계수를 은행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

- (현행)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의 위험계수* 적용

* (예 : AAA등급 1.2%, BBB등급 6% / 국채 및 정부보증 공사채 0%)

○ (개선) 新지급여력제도 도입*시('22년 예정)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 적용

* IFRS17(보험계약 관련 회계기준) 시행에 따라 현행 RBC제도를 新지급 여력제도(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건전성제도)로 전환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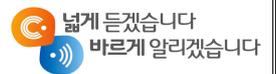
- 新지급여력제도 도입단계에서 커버드본드에 대한 별도 위험 계수 적용(여부)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

⇒ (조치사항)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개정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1. 개념 및 특징

- (개념)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,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
- (특징) 커버드본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
 - ① (우선변제권) 투자자는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장
 - ② (이중상환청구권) 투자자가 담보자산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한 선순위청구권 행사 가능
 - ③ (자산의 부내유지) 커버드본드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법적으로 절연되나, 회계상 부내 유지(On-balance)
 - ④ (담보자산 교체·추가)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의 교체·추가를 통해 만기시까지 커버풀 담보력 유지가 가능

2. 장점(MBS 비교)

- 커버드본드는 담보의 보강(기초자산+발행기관)으로 신용리스크가 낮아 일반적으로 MBS 보다 저리로 발행
- 또한, MBS와 달리 담보자산의 교체 또는 추가가 가능하여 장기간 담보력 유지 가능

MBS와 커버드본드 비교

구 분	커버드본드	MBS
발행주체	은행 등 적격 발행기관	SPC
청구권	발행기관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중청구권	기초자산이 SPC에 양도되어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 없음
회계처리	대차대조표에 잔존(On-Balance)	SPC에 양도(Off-Balance)
담보자산 교체 및 추가	가능	대부분 불가능

1. 국내시장

- '18.12월 현재 국내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은 총 16건으로 해외 외화발행 11건(\$50억, €5억), 국내 원화발행 5건(1.19조원)
 - (주금공)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 7건,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5건(1.19조원)
 - (국내은행) 총 4건 모두 해외발행으로, 국내 커버드본드법에 근거한 발행은 3건(\$15억)

2. 해외시장

- 유럽지역을 중심*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 및 신용도 높은 투자대상으로 활성화

* '17년말 기준 전체 커버드본드 중 유럽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잔액의 92.9%, 연간 발행액의 94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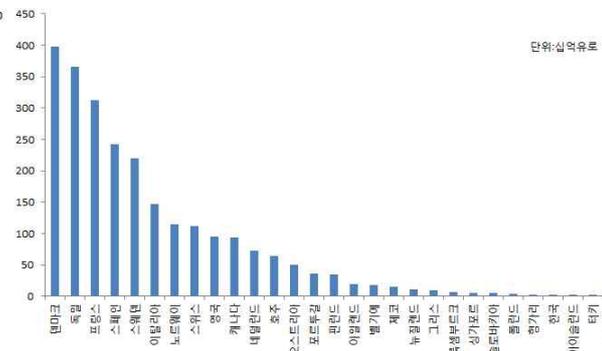
- (발행잔액) 유럽지역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은 '08~'17년 기간중 약 2.5조유로 내외(2.3조~2.8조유로)
- (신규발행) '08~'17년 기간중 연평균 약 5,555억유로가 신규 발행되었으며 발행규모도 안정적 수준(4,320억~7,080억유로)
- '17년말 주요 국가별 커버드본드 발행잔액 규모는 덴마크(3,984억 유로), 독일(3,662억유로), 프랑스(3,122억유로), 스페인(2,419억유로), 스웨덴(2,192억유로) 順으로 주요 5개국 약 62.5% 차지

전체 커버드본드 시장 현황



* 자료 : ECBC

국가별 커버드본드 발행잔액



* 자료 : ECBC